##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69

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:이수진·박홍배·김정호

송옥주 • 추미애 • 정태호

이기헌 • 민형배 • 서영교

송재봉 · 안규백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,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 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.

한편,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. 그런데 일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 취지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폄훼하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음.

이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할 수 있 도록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12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).

##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2(청년에 대한 영향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·능력개발·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에 따른 정책의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·운용할 수 있다.
  -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 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- 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·평가의 방법과 절차,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7.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
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청년 기본소득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촉진을 위하여 청년에게 기본소득 (이하 "청년기본소득"이라 한다)을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대의 청년으로 한다.
  - ③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통계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 사회적·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  - ④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하며,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.
  - ⑤ 청년기본소득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.
  - ⑥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제12조의2(청년에 대한 영향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 관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・능 력개발・복지 등 청년의 권익 에 미칠 영향을 분석・평가하 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 립・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.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・평 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・운 용할 수 있다.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
	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·평 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·운 용할 수 있다.
	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·평 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

제13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제13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~ 6. (생략) <신 설>

7. (생략) ③ ~ 9 (생략) <신 설>

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 가의 방법과 절차,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(현행과 같음)

  - 1. ~ 6. (현행과 같음)
  - 7.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 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  -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  - ③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2(청년 기본소득 지원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년의 사회 참여 및 사회적 기 본권 보장 촉진을 위하여 청년 에게 기본소득(이하 "청년기본 소득"이라 한다)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대의 청년으로 한다.
- ③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

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통계 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사회적・경제적 여건을 고려하 여 결정한다.

- ④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하며, 지급대상자에게 긴급 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연도 총 지급액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청년기본소득은 「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 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의 지 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